

의안번호	2211964
의 퇴 인	김동아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 계 번호	25D42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지원을 확대하고, 특수임무부상자의 진료비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규정을 삭제하며, 특수임무공로자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9억 5,200만원(연평균 21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진료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진료지원 확대	704	761	822	885	953	4,125	825
	특수임무공로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	1,171	1,188	1,206	1,223	1,241	6,029	1,206
	특수임무부상자 본인부담 삭제	25	31	38	47	57	198	40
	소계	1,900	1,980	2,066	2,155	2,251	10,352	2,070
특수임무공로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118	119	120	121	122	600	120
합계		2,018	2,099	2,186	2,276	2,373	10,952	2,1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33조(진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공로자를 추가함(제1항 및 제5항)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에 대해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72조제1항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공로자를 추가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33조(진료)	○	-
2	안 제72조제1항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공로자를 추가하고,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에 대한 10% 본인 부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재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으며 위탁병원 진료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상이등급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모두 90% 지원대상이 됨
 - 또한, 현재 특수임무부상자는 6급 이상은 진료비를 전액 국비지원 받고 있으며,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비에 대해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비의 본인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등급이나 비상이처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게 됨
- 특수임무공로자수는 2024년 특수임무공로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단가는 2024년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진료지원 확대(안 제33조제1항 개정 및 제33조제5항제1호 삭제)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의 보훈병원 진료 시 60% 감면대상에서 국비지원(본인부담 비율 10%)으로 확대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
- 2024년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수는 1,28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 감소하였음

[표 2] 특수임무공로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인원	1,357	1,346	1,322	1,307	1,289	-1.3

주: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기준 특수임무공로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추계기간의 특수임무공로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 특수임무공로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가율
인원	1,239	1,223	1,207	1,191	1,176	-1.3

주: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특수임무공로자의 추계기간의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는 국비지원 수진횟수와 진료단가를 적용
 - 수진횟수는 2024년도 국비대상자 수진횟수 9.9회를 적용
 - 진료단가는 개정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 10%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비용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가정하고 60% 감면지원 단가와와의 차이를 산정
 - 진료단가 차이 산정 시, 2024년 국비지원 단가와 60% 감면지원 단가에 각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3%, 4.1%를 적용하여 추정

[표 4]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인원(명)		1,239	1,223	1,207	1,191	1,176
㉡수진횟수(회)		9.9	9.9	9.9	9.9	9.9
진료단가 차액 (원)	60% 감면단가	83,520	86,944	90,509	94,220	98,083
	90% 국비단가	140,947	149,827	159,266	169,300	179,966
	㉢차이	57,427	62,883	68,757	75,080	81,883
진료비(백만원) (㉠×㉡×㉢)		704	761	822	885	9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특수임무공로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안 제33조제1항 개정 및 제33조제5항제1호 삭제)

□ 현재 특수임무공로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의 위탁병원 진료 시 신규 국비지원 대상(본인부담 비율 10%)이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수진횟수는 2024년도 국비대상자 수진횟수 11.7회 적용
- 진료단가는 개정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 10%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비용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가정
 - 진료단가 차이 산정 시, 2024년 국비지원 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8%를 적용하여 추정

[표 5] 특수임무공로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인원(명)		1,239	1,223	1,207	1,191	1,176
㉡수진횟수(회)		11.7	11.7	11.7	11.7	11.7
㉢90% 국비단가(원)		80,780	83,041	85,367	87,757	90,214
진료비(백만원) (㉠×㉡×㉢)		1,171	1,188	1,206	1,223	1,2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상이등급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에 대한 10% 본인부담 조항 삭제(안 제33조제4항 개정)

□ 현행법령은 상이등급 7급의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본인부담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지원대상자 수는 2024년 기준 상이등급 7급 특수임무부상자 수 81명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17.2%를 적용하여 추정
- 수진횟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2024년 국비진료 수진횟수를 활용하였으며, 비상이처 진료비율은 최근 3년간 비상이처 진료비율 평균인 73.6%를 적용

[표 6] 특수임무부상자 본인부담비율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①대상인원(명)		130	153	179	210	246
보훈 병원	②수진횟수(회)	9.9	9.9	9.9	9.9	9.9
	③진료단가	156,608	166,474	176,962	188,111	199,962
	④비상이처 진료비율	73.6	73.6	73.6	73.6	73.6
	⑤본인부담비율	0.1	0.1	0.1	0.1	0.1
	진료비(백만원) (a×b×c×d×e)	15	19	23	29	36
위탁 병원	②수진횟수(회)	11.7	11.7	11.7	11.7	11.7
	③진료단가	89,755	92,268	94,852	97,508	100,238
	④비상이처 진료비율	73.6	73.6	73.6	73.6	73.6
	⑤본인부담비율	0.1	0.1	0.1	0.1	0.1
	진료비(백만원) (a×b×c×d×e)	10	12	15	18	21
진료비 합계		25	31	38	47	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수송지원

□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공로자를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수송시설 별 이용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교통시설		이용지원대상자	감면률	비 고
열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지원공상, 재해부상자	연간 6회 무임 후 50% 감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지원공상, 재해부상자	무 임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버 스	시내(농어촌)버스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마을버스 제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 임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7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5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	무임 (연간 6회)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 인 포함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50% 감면 (연간 6회)	
		·8~14급 5.18민주부상자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 단가는 2024년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¹⁾을 적용함

[표 8] 수송시설 이용지원 실적

	대상인원(명)	감면(추계)액(백만원)	보조액(백만원)	지원단가(원)
2020	115,789	18,937	12,082	104,345
2021	114,398	19,734	10,158	88,795
2022	112,066	19,894	10,729	95,738
2023	118,761	18,716	10,719	90,257
2024	119,080	20,898	10,729	90,099

주: 1) 대상인원은 2023년 7월 부터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되어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고속철

1) 2025년 7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6년 이후 2.0%임

도를 기준으로 함

- 2) 2022년까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액계약을 했으나, 2023년 이후 전국 시내버스 호환카드 시행으로 실제 시내버스 이용(감면)액을 산출하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공로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인원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특수임무공로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인원(명)	1,239	1,223	1,207	1,191	1,176
지원단가(원)	95,614	97,526	99,477	101,467	103,496
추가재정소요(백만원)	118	119	120	121	1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지원을 확대하고, 특수임무부상자의 진료비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규정을 삭제하며, 특수임무공로자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9억 5,200만원(연평균 21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진료	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진료지원 확대	704	761	822	885	953	4,125	825
	특수임무공로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	1,171	1,188	1,206	1,223	1,241	6,029	1,206
	특수임무부상자 본인부담 삭제	25	31	38	47	57	198	40
	소계	1,900	1,980	2,066	2,155	2,251	10,352	2,070
특수임무공로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118	119	120	121	122	600	120
합계		2,018	2,099	2,186	2,276	2,373	10,952	2,1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등을 최근 5년간 국비진료지원 실적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